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| | <h1>보도 설명 자료</h1> | |
| 배 포 일 | 2020. 2. 27. / (총 3매) | 담당부서 |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자원관리팀 |
| 과 장 | 이 주 현 | 전 화 | 043-719-9357 |
| 담 당 자 | 최 진 선 | | 043-719-9355 |

**“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코로나19 대응지침(6판)에
따른 개인보호구로 일반 가운이 아니라, 바이러스 비밀이
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
용도의 ‘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’을 의미함”**

(2월 27일자 한국경제, 의변 “코로나19 의료진 ‘방호복 벗고 가운 입으라’ 지침은 인권침해”,
2월 27일자 세계일보, “전신보호복 대신 ‘가운’ 입고 검체 채취”...의료계 공분” 보도 관련)

□ 기사 주요내용

- 선별진료소 등 검체 채취 시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는 공문이 발송됨

□ 설명 내용

-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의, N95마스크, 고글,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(가운*, N95마스크,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착용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.

* 코로나19 대응지침(6판) 개인보호구 사용에서 설명하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임 <참고>

- 이는 진료 및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등 현장과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(WHO) 코로나19

보호복 권장기준* 및 범대위(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)감염전문가**
자문을 받아서 마련(코로나19 대응 지침 제6판)한 것입니다.

* WHO Novel Coronavirus (COVID-19) v3 Operational Support & Logistics
Disease Commodity Packages. 2020.2.7.

** 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 감염관리지침위원회

- 위험도의 수준에 따른 보호구 착용 수준을 권장한 것이므로 반드시
레벨D 보호복 착용을 해야 하는 의료진 등에게 레벨D 보호복을
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○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선 방역 현장에서 이를 일반 가운데로
오해할 수 있으므로, 다시 상세하게 안내('20.2.26)하였습니다.

<세계보건기구(WHO) Novel Coronavirus (COVID-19) v3 Operational Support &
Logistics Disease Commodity Packages.('20.2.7) 발취>

| 종류 | 규격 |
|--------------|---|
| 가운 (Gown) | 1회용, 장딴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 EU PPE Regulation 2016/425 /EU MDD directive 93/42/EEC FDA class I 또는 II 의료용품 또는 동등이상용품 EN 13795 규격 용품 AMI PB70 또는 동등 이상용품 |

참고


코로나19 대응지침(6판)의 개인보호구 사용 안내

표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

| 상황, 행위 | 개인보호구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호흡기 보호 | | | 전신 보호 | | 눈 보호 | |
| | 수술용 마스크 | N95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 |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| 장갑 | 긴팔 가운* | 전신 보호복 (덧신포함) | 보안경 (또는 안면보호구) |
| 검역(역학조사) | | ● | | ● | | ● | ● |
| 선별데스크 | | ● | | ● | ● | | |
| 격리진료소 접수, 안내 | | ● | | ● | ● | | |
| 격리진료소 진료, 간호 | | ● | | ● | | ● | ● |
| 이송(구급차 운전자) | | ● | | ● | | | |
| 이송(검역관, 보건소직원, 응급구조사 등) | | ● | | ● | | ● | ● |
| 구급차 소독 | | ● | | ● | | ● | ● |
| 의심환자 병실출입, 진료, 간호 등 | | ● | | ● | | ● | ● |
| 에어로졸 생성 처치 | | | ● | ● | | ● | ● |
| 검사(X-ray 등 영상의학검사) | | | ● | ● | | ● | ● |
| 호흡기 검체 채취 | | | ● | ● | | ● | ● |
| 검체 취급(실험실, 검사실 등) | | ● | ● | ● | | ● | ● |
| 검체 이송(파손없이 포장된 검체) | | | | ● | | | |
| 사체 이송, 안치 | | ● | | ● | | ● | |
| 병실 청소·소독 | | ● | | ● | | ● | ● |
| 의료폐기물 포장, 취급 | | ● | | ● | | ● | ● |
| 의료폐기물 운반 | ● | | | ● | ● | | |

*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

개인보호구 특성과 용도(발체)

| 보호구 | 위해요소 | 특성 및 용도 (indications for use) | 참고사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가운(Gown) | 비말, 혈액,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튀 |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|  |